## 「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」일부 개정(안)

## 1. 개정 이유

ICT 예산(일반·균특) 전담관리 확대 추진으로 종전 과기정통부 훈령을 고시로 상향, 명칭 변경에 따라 전담기관 기준을 일부 개선하고자 함

## 2. 주요 내용

- o 기준의 법적 근거 규정명칭 변경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6조, 제9조, 제 10조, 제11조, 제13조)
- 종전의 「ICT 기금사업 관리 지침」을 「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」 (이하 "관리규정")으로 명칭 변경
- o 고시에서 위임·적용받는 조항 반영(안 제1조)
- 고시의 전담관리 근거 조문 이동(제8조→제4조)에 따른 반영

붙임: 「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」개정(안) 신구대비표

## <u>개정안 신구대비표</u>

1 -17	7 -1 (2)	7-1 10
현 행 	개 정 (안)	개정 사유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ICT 기금사업의	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ICT 기금사업의	o 규정 변경 -정보통신방송
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하여 <u>「ICT</u>	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하여 <u>「정보</u>	사업 관리규정
기금사업 관리지침」(이하 "관리	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」(이하 "관리	제정에 따른
<u>지침"이라 한다)</u> <u>제8조</u> 에 따라 기금	<u>규정"이라 한다)</u> <u>제4조</u> 에 따라 기금	명칭 변경
사업의 평가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	사업의 평가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	-적용조문 변경
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	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	
한다.	한다.	
제2조(적용범위) 이 기준은 ICT 기금	제2조(적용범위) 이 기준은 ICT 기금	o 규정 변경
사업의 평가 및 성과관리를 위해 <u>관</u>	사업의 평가 및 성과관리를 위해 <u>관</u>	
리지침을 적용받는 기금사업에 대하	<u>리규정</u> 을 적용받는 기금사업에 대하	
여 적용한다. 다만, 관련 법령이나	여 적용한다. 다만, 관련 법령이나	
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	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	
에는 그에 따른다.	에는 그에 따른다.	
제3조(정의)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	o 규정 변경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"사전검토"라 함은 <u>관리지침</u> 제	1. "사전검토"라 함은 <u>관리규정</u> 제	
15조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계획	15조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계획	
서 접수 후 계획서상에 나타난	서 접수 후 계획서상에 나타난	
지원대상 사업의 타당성·적절	지원대상 사업의 타당성 · 적절	
성 등을 검토하는 활동을 말한	성 등을 검토하는 활동을 말한	
다.	다.	
2. "진도점검"라 함은 <u>관리지침</u> 제26	2. "진도점검"라 함은 <u>관리규정</u> 제26	
조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접수하	조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접수하	
여 기금사업 수행 및 추진 현황	여 기금사업 수행 및 추진 현황	
등을 해당연도 중간에 점검하는	등을 해당연도 중간에 점검하는	
활동을 말한다.	활동을 말한다.	
3. ~ 4. (생략)	3. ~ 4. (현행과 같음)	
5. "최종평가"라 함은 <u>관리지침</u> 제27	5. "최종평가"라 함은 <u>관리규정</u> 제27	
조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접수하	조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접수하	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 사유
여 해당 사업결과에 대하여 심	여 해당 사업결과에 대하여 심	
의하는 평가를 말한다.	의하는 평가를 말한다.	
6. (생략)	6. (생략)	
②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	②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	
이외에는 <u>관리지침</u> 에서 정하는 바	이외에는 <u>관리규정</u> 에서 정하는 바	
에 따른다.	에 따른다.	
제6조(평가대상 사업 제외) 평가는 관	제6조(평가대상 사업 제외) 평가는 관	o 규정 변경
리지침 제2조에 따라 기금으로 시	<u>리규정</u> 제2조에 따라 기금으로 시	
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. 다	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. 다	
만, 실질적으로 평가가 곤란하거나	만, 실질적으로 평가가 곤란하거나	
실익이 적은 경우 및 다음 각 호에	실익이 적은 경우 및 다음 각 호에	
해당하는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	해당하는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	
거쳐 평가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수	거쳐 평가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수	
있다.	있다.	
1. 경상경비로만 구성된 사업	1. 경상경비로만 구성된 사업	
2.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(이	2.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(이	
하 "장관"라 한다)이 인정하는 사업	하 "장관"라 한다)이 인정하는 사업	
제9조(사전검토) ① 전담기관의 장은	제9조(사전검토) ① 전담기관의 장은	o 규정 변경
<u>관리지침</u> 제15조에 따라 접수된 기	<u>관리규정</u> 제15조에 따라 접수된 기	
금사업 수행계획서의 사업추진계획	금사업 수행계획서의 사업추진계획	
의 타당성·적절성 등에 대하여 사	의 타당성·적절성 등에 대하여 사	
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.	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.	
② ~ ③ (생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	
제10조(수행계획서 보완) 전담기관의	<b>제10조(수행계획서 보완)</b> 전담기관의	o 규정 변경
장은 관리지침 제15조에 의한 사전	장은 관리규정 제15조에 의한 사전	
검토 내용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	검토 내용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	
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수행계획서		
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	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	
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	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	
ı	I	I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 사유
제11조(진도점검) ① 전담기관의 장은	제11조(진도점검) ① 전담기관의 장은	o 규정 변경
<u>관리지침</u> 제26조에 따라 접수된 중	<u>관리규정</u> 제26조에 따라 접수된 중	
간보고서 수행상황에 대하여 진도	간보고서 수행상황에 대하여 진도	
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제출된 보	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제출된 보	
고서 내용의 확인 및 추가자료 보	고서 내용의 확인 및 추가자료 보	
완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	완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	
수 있다. 단,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	수 있다. 단,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	
여 중간보고를 면제하거나 보고시	여 중간보고를 면제하거나 보고시	
기를 조정할 수 있다.	기를 조정할 수 있다.	
② ~ ③ (생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	
제13조(최종평가) 전담기관의 장은 관	제13조(최종평가) 전담기관의 장은 <u>관</u>	o 규정 변경
리지침 제27조에 따라 접수된 수행	<u>리규정</u> 제27조에 따라 접수된 수행	
상황 최종보고서 결과에 대하여 최	상황 최종보고서 결과에 대하여 최	
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, 전담기	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, 전담기	
관의 장은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의	관의 장은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의	
장에게 최종보고서의 보완을 요구	장에게 최종보고서의 보완을 요구	
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이	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이	
에 응하여야 한다.	에 응하여야 한다.	